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현재 부과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
 - 기본 부과금액을 17,680원에서 18,800원으로,
 - 초과시 부과금액을 1,170원에서 1,360원으로 인상 조정

III. 검토의견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정요건에 부합한 2개 청소대행업체(주 환경개발, 주 종북환경개발)와 매 3년 기간으로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위 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는 관할 대행구역내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함에 있어 법률 및 조례에 정한 청소장비를 보유하여야 하고(제5조), 청소원 등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봉급을

지급하되 체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제9조), 청소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도록(제12조) 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 조례개정 이후 동결해 온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간 인건비·유류비 등 인상으로 악화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종사원들의 불만해소 등 분뇨·정화조 청소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7년째 유지되어 온 낮은 청소 수수료로 인해 청소종사원에 대한 임금, 복지수준이 열악하고 직영 생활쓰레기 미화원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구가 이미 조례개정을 하여 청소 수수료를 인상(2003년 10개구, 2004년 5개구, 2005년 3개구)하였고, 1개구(마포구)는 금월 중에 인상예정으로 있는 등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도 적정수준의 수수료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분뇨 수거 수수료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수거대상 개소가 전체 화장실 수의 29%(500여 개소)에 불과하고 주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인상요인을 정화조 청소 비용에 이전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금액을 기본금액 18,800원, 초과금액 1,360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구와 인접한 중구·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구 등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뇨 수거·처리 등 청소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자목), 이를 청소대행업자에게 대행을 하더라도 수탁자는 업무처리를 대신할 뿐 그 법률효과는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소 수수료 기준의 부적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7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이 2005년 5월 4일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각 구에서 비용 분담하여

청소원가 및 경영수지 분석 등 주기적인 용역시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동 규약 제4조, 제7조 및 제12조제2항)

2. 개정안 부칙 규정에서 조례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제7항에 의거 공포한 날로부터 최소한 2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함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안 의결후 이송 등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5년 7월 20일 이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가 糞尿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경우에는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徵收할 수 있다.

第35條 (糞尿等關聯營業) ①糞尿 또는 畜産廢水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나 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관리 또는 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의 運搬을 業(이하 “糞尿等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糞尿等關聯營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糞尿등收集·運搬業

糞尿(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 또는 畜産廢水(畜産廢水處理施設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거나 이를 모두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糞尿등處理業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 또는 畜産廢水を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營業

3. 淨化槽清掃業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清掃하고,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4.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의 관리를 代行하는 營業

○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자. 清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第19條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

⑦ 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142條 (行政協議會의 구성) ① 地方自治團體는 2個 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생략)

第147條 (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 協議會를 구성한 關係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사항
2.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무)

- ① 모든 위원은 협의회의 규약 및 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위원은 협의회에서 의결·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재원)

- ② 제1항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第13條의2 (法令의 施行猶豫期間) 國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와 직접 관련되는 法律·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은 긴급히 施行하여야 할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布日로부터 적어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현황

※ 최근 총 25개구중 18개구 인상(2003년도 10, 2004년도 5, 2005년도 3개구)

(2005. 5. 31. 현재)

자치구명	인상일시	인 상 내 역		비 고
		기본요금(0.75㎡까지)	초과요금(0.1㎡당)	
종로구	'98.12.31.	16,840원→17,680원	1,100원→1,170원	
중 구	'03.11.18.	17,680원→18,810원	1,160원→1,360원	2003년 인상
용산구	'04. 5.28.	17,680원→18,810원	1,160원→1,360원	2004년 인상
성동구	'04.12.31.	17,680원→18,810원	1,155원→1,350원	2004년 인상
광진구	'04.12.29.	17,680원→18,810원	1,155원→1,350원	2004년 인상
동대문구	'03. 7.25.	17,680원→18,810원	1,160원→1,360원	2003년 인상
중랑구	'03. 9.26.	17,680원→18,810원	1,160원→1,341원	2003년 인상
성북구	'03.12.31.	17,680원→18,800원	1,160원→1,360원	2003년 인상
강북구	'03. 3. 1.	17,680원→18,810원	1,160원→1,320원	2003년 인상
도봉구	'03. 3.12.	17,680원→18,810원	1,160원→1,320원	2003년 인상
노원구	'03. 1. 1.	17,680원→18,810원	1,160원→1,380원	2003년 인상
은평구	'03. 6.20.	16,840원→18,800원	1,100원→1,300원	2003년 인상
서대문구	'04.11.19.	17,680원→18,810원	1,160원→1,360원	2004년 인상
마포구	'01. 1. 5.	16,840원→17,680원	1,100원→1,160원	※05.6월 인상예정
양천구	'99.11.13.	16,840원→17,680원	1,100원→1,155원	
강서구	'00. 3.17.	16,840원→17,680원	1,100원→1,160원	
구로구	'05. 5.20.	17,680원→18,800원	1,160원→1,360원	2005년 인상
금천구	'05. 4.11.	17,680원→18,810원	1,155원→1,360원	2005년 인상
영등포구	'04. 3.23.	17,680원→18,710원	1,160원→1,320원	2004년 인상
동작구	'98. 1.10	16,840원→17,700원	1,100원→1,200원	
관악구	'03.11.25.	16,840원→17,680원	1,100원→1,200원	2003년 인상
서초구	'92. 7. 1.	16,840원	1,100원	
강남구	'99.11. 5.	16,840원→17,680원	1,100원→1,160원	
송파구	'05. 3.14	18,520원→18,810원	1,265원→1,348원	2005년 인상
강동구	'03.11. 5.	17,850원→18,742원	1,190원→1,320원	2003년 인상